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16
----------	------

발의연월일 : 2016. 10. 19.

발의자 : 안상수 · 이만희 · 황주홍

이개호 · 김영춘 · 김종회

김성찬 · 이완영 · 이양수

홍문표 · 권석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의 범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말한다”를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의 어업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말한다.</p> <p>2.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제3조제1호가 목의 어업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